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의 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2024. 11.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가. 의안번호: 24-143
나. 제 안 자: 강동오 의원 외 6인
다. 제안일자: 2024년 11월 15일(금)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4년 11월 18일(월)

2. 제안사유

직장 체육의 활성화와 우수 선수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의 체육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경기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5조)
다. 경기인 채용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경기인 보수 및 운영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바. 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소집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사. 경기부 운영 위탁 및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

아. 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 보호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생활체육과(체육진흥팀)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 2024. 11. 8. ~ 11. 13.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 제정안은 2024년 11월 15일 강동오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직장 체육 활성화와 우수 선수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

---

1)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1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에 따르면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 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 의무를 두고 있고,

○ 현재 전국 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7개구가 제정[2]하였는데, 이 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금천구, 강남구, 은평구, 강동구 등 4개 구임.

- 최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운영 규정을 조례로 상향시키고 있는 추세[3]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서울시는 전문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창단 ~ 창단 2년차까지 운영비 전액 지원, 창단 3년차 이상 팀규모,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 보조, 창단 3년차 이상부터는 구 예산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책정됨. 다만, 2025년 신규창단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시예산 미편성으로 2025년 시보조금 지원 불가함.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17개 종목)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음.

※ 9개구 미설치, 금천구는 탁구와 검도의 2개 종목을 운영함.

2) 금천구, 관악구, 용산구, 강남구,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3) 2020년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대두로 2020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이 마련된 이후, 2022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표명"에 따라, 법적으로 인권보호 등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근거를 조례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서울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연번	자치구	종목	경기인			2024년 본예산액 (단위:천원)		
			계	지도자	선수			
1	종로구	역도	**4**	1	3	구) 175,000		
2	중구	레슬링 (여)	**8**	2	6	608,650	시	288,000
							구	320,650
3	성동구	유도	**6**	1	5	구) 232,087		
4	광진구	보디빌딩	**7**	1	6	351,730	시	255,360
							구	96,730
5	성북구	펜싱	**6**	1	5	구) 214,560		
6	노원구	사격	**4**	1	3	423,940	시	242,423
							구	190,517
7	**은평구**	롤러	**9**	2	7	구) 358,769		
8	구로구	레슬링 (남)	**7**	1	6	938,612	시	270,000
							구	668,612
9	**금천구**	탁구	**7**	1	6	623,834	시	287,445
							구	336,389
		검도	**8**	1	7	913,425	시	393,052
							구	520,373
10	동작구	씨름	**9**	2	7	707,500	시	397,000
							구	310,500
11	**강남구**	체조	**6**	1	5	526,638	시	118,800
							구	407,838
12	송파구	조정	**6**	1	5	618,375	시	249,498
							구	368,877
13	강동구	카누	**7**	1	6	구) 288,500		
14	서대문구	농구 (여)	**15**	3	12	구) 740,036		
15	도봉구	브레이킹	**7**	1	6	구) 185,500		
16	동대문구	태권도	**8**	2	6	-		

나. 조문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경기인과 계약 체결 및 해지, 마포구 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설치·구성, 인권보호 조치 등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조문 체계〉

조 항	조 제목	조 항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2조	정의	제10조	회의
제3조	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4조	경기인과 계약체결 및 해지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	경기인 보수 등	제13조	운영·관리의 위탁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14조	관리규정 등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인권보호 조치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16조	운영세칙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 규정은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인”, “지도자” 및 “운영경비”를 정의하고 있음.

- 경기인 중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안 제3조는 경기부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며,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경기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단장, 부단장, 간사는 소관부서의 국·과장 및 팀장으로 하는 것임.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경기인과 계약체결 및 해지,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며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와 선수등록이 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토록 하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유 발생 시 노동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 수당, 기타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마포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며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급여, 수당,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의원 1명,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 관련분야 전문가 3명, 지도자 및 선수대표 1명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탁자의 경기부 관리 규정 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음.

- 직장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5조는 인권보호 조치를 명시하였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책임자에게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인권 중심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 결과

○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장 체육 진흥과 체

육활동 육성에 필요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향후 동 조례가 시행되면 직장 체육을 진흥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하는데 지원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0. 12. 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8. 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7. 7.>